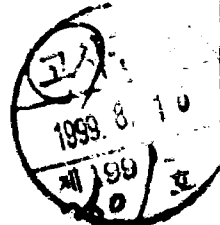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3707-8235~6 / 전송3707-8249
 처리부서 : 주택재개발과(서소문별관2층)/과장 배경동/담당사무관 정병일/담당 손한중

문서번호 주재58531-2299
 시행일자 1999. 8. 16.
 (정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취급		시 장	
보존			
주택재개발과장	전결		
		법무담당관실사필 (고시안심사)	
기안	손한중	2담당사무관	
			협조

제 목 신공역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적승인

1. 마포구 도개58531-1138('99. 8. 9)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75호('96. 4. 3)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70호('99. 6. 16)로 변경 지정된 마포구 신공역동 2-264번지 일대 "신공역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지적 측량결과 구역의 경계 변경없이 획지별 면적 변경을 신청 하였는바,

3. 구청장이 신청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별 일부 획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

- 가. 구역명 : 신공역제3주택재개발구역
- 나. 위치 : 마포구 신공역동 2-264번지 일대
- 다. 면적 : 15,395.00㎡(변경없음)

따로붙임 : 1) 고시(안)1부 . 끝 .

서울특별시 장

전결 주택재개발과장 배경동

인사담당관실

(제 2 안)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제 목 : 관보 게재의뢰

1. 우리시 마포구 신공덕제3주택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해 변경 결정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코자하오니 관보에 게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게재구분 : 고 시

나. 게재건명 : 신공덕제3주택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다. 관련법규 :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2부. 끝 .

서울특별시

전철 주택개발과장 배경동

(제 3 안)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참 조 : 주거환경과장

제 목 : 신공덕제3주택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적승인 보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75호('96. 4. 3)로 주택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70호('99. 6. 16)로 변경 지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신공덕제3주택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택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가. 구역명 : 신공덕제3주택개발구역

나. 위치 : 마포구 신공덕 2-264번지 일대

다. 면적 : 15,395.00㎡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끝 .

서울특별시

전결 주택재개발과장 배경동

(제 4 안)

수 신 : 마포구청장

참 조 : 도시개발과장

제 목 :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적승인 통보

1. 마포구 도개58531-1138('99. 8.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신청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의 변경지정 요청에 대하여 귀 구의 신청 내용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련 도서를 해당부서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전결 주택재개발과장 배경동

(제 5 안)

수 신 : 받는곳 참조

제 목 :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적승인 통보

1. 마포구 도개58531-1138('99. 8. 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75호('96. 4. 3)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70호('99. 6. 16)로 변경 지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 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 음을 통보 합니다.

가. 구역명 :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나. 위치 : 마포구 신공덕 2-264번지 일대

도시재개발
과장
배경동

다. 면적 : 15,395.00㎡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 끝 .

주 택 재 개 발 과 장

받는곳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제 1999-170호	1999.8.4	제 253호
담당자	행정4팀94119	
송준서	구보영	박승룡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 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75호('96. 4. 3)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70호('99. 6. 16)로 변경지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신공덕재3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9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신공덕재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적승인 고시(안)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신공덕재3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2) 면적(단위 : m²)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율(%)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변경전	변경후
택지 및 공공시설	소계	15,395.00	15,395.00	0	100.00	100.00
	택지1	13,831.00	13,828.00	감 3.00	89.84	89.92
	도로	1,564.00	1,567.00	증 3.00	10.16	10.18

라. 공공시설(도로)의 위치 및 규모 : 변경없음.

마.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바.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없음.

사. 사업예정시기 : 변경없음.

아.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 및 마포구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습니다)

원본대조필